

報恩地域 人口動態 申告改善 研究

造成員活動指針書

1973年 3月

家族計劃研究院

報恩地域 人口動態 申告改善 研究

造成員活動指針書

1973年 3月



머 리 말

家族計劃研究院은 우리나라의 부진한 人口動態申告水準을 신속히 개선시키기 위한 Action Research Program을 1971년 9월 - 1973년 2월의 18개월간 전국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 연구결과는 현재 집계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그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本研究院은 이 연구를 통하여 얻은 값진 경험으로부터 1973년 4월부터 忠北 報恩郡 전지역을 대상으로 단시일에 인구동태신고 수준을 개선하여 신고자료로써 이용 가능한 人口動態統計를 생산해 보려는 의목적 사업을 착수하였다.

보은군에는 인구동태신고 개선을 위한 집중적 노력이 경주될 것이며, 地域・社會 資源이 최대로 활용될 것이다.

이 冊子는 보은지역 인구동태신고 개선사업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造成員의 活動과 관련되는 諸事項이 수록되어 있다. 造成員 活動指針은 조성원 활동의

体系化 및 能率化, 造成活動 成果의 효율적 評價 등에
역점을 두어 작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活動指針은 造成員 자신의 활동에 도
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보은군 인구동태신고 개선사업
의 내용을 이해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도편
달을 바라마지 않는다.

1973 년 3 월

家族計劃研究院長 車 潤 根

目 次

머 리 말	1
第 1 章 緒 論	5
1. 人口動態統計란 무엇인가?	5
2. 現 戶籍 및 人口動態 申告制度	7
3. 人口動態 申告水準	10
4. 本研究事業의 性格	12
第 2 章 造成員의 活動	16
1. 事業目的	16
2. 活動目標	17
3. 活動地域 및 対象	20
4. 造成員 活動方法	29
5. 申告確認	37
第 3 章 家口調査	39
1. 家口調査의 目的	39

2. 家口調査 実施要領	40
3. 家口現況記録表 作成要領	47
4. 家口現況要計表 作成要領	55
 第4章 報告 및 其他 様式の 作成要領	59
1. 報告 및 其他 様式の 種類	59
2. 記入要領	63

第 1 章 緒 論

1. 人口動態統計란 무엇인가?

出生, 死亡, 胎兒死亡(死産), 結婚, 離婚 등은 개인에 있어 그의 생명 획득 및 상실 또는 그의 생존 기간에 일어나는 身分上的 변화 등과 관련되는 주요 사건(events)이다. 이들 주요 사건을 人口動態 事件이라고 하며, 人口動態統計(Vital Statistics)는 일정한 人口集團 및 그 지역 내에서 일어난 人口動態 事件의 수 및 특성을 기술하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이들 人口動態 事件의 記錄은 근원적으로 戶籍과 밀접히 연관된다. 戶籍은 개인의 身分關係을 公簿(戶籍簿)에 공증하는 公文書이다. 이것은 기능면에서 일정한 親族團體의 構成員에 대하여 그 각 구성원 각 개인의 出生에서 死亡에 이르는 사이의 주요 사건을 시간적 서열에 따라 動的으로 파악하는 기능을 영위하는 공문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戶籍은 個人 단위가 아니고 특정한 親族團體를 단위로 하고, 個人의 出生에서 死亡에 이르기까지의 身分上的 주요 사건을 통일적

으로 기록하는 소위 身分關係의 系譜的 構造를 가지고 있다.

한편 人口動態統計는 전체적이든 部分的이든 인구동태 사건의 발생 및 특성의 合法化 目的을 위해 기록되는 때 얻어지는 情報에서 由來한다. 그러므로 이 統計를 申告統計 (Registration Statistics) 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人口動態 統計는 戶籍法과 統計法의 諸規定과 밀접히 연관되어 수집된다. 戶籍法 (1963. 7. 31. 법률 제 1377 호)의 제규정 (제 51 조 및 88 조)에 의한 신고의무자의 호적신고시, 統計法 (1962. 12. 12. 법률 제 1215 호) 및 인구동태조사규칙에 의하여 동시에 이루어지는 인구동태 신고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에서 인구동태통계가 생산된다. 그러므로 완전한 인구동태통계는 적기의 완벽한 戶籍申告에 의하여 생산 가능한 것이다.

2. 現 戶籍 및 人口動態 申告制度

우리나라의 戶籍에 관한 事務는 市・區・邑・面의 長이 管掌하며(호적법 제2조 및 제5조), 호적사무는 시, 읍, 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地方法院長이 감독한다(호적법 제4조). 그러므로 우리나라 戶籍申告는 法院의 감독하에 市・區, 邑, 面 事務所에서 이루어진다.

한편 人口動態 申告는 統計法 및 人口動態調査規則에 의거하여 市・區・邑・面 事務所에서 이루어져서, 申告書는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제출된다. 그러므로 人口動態 申告는 경제기획원의 감독하에 市・區・邑・面에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人口動態 및 戶籍 申告制度는 二元化되어 있고, 주관하는 機關이 다르나, 이 兩申告가 이루어지는 場所와 申告義務者는 동일하다.

戶籍法 및 人口動態調査規則에 규정된 事件種類別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신고종류	신고의무자 및 순위	
	국 내 거 주 자	국외거주자
출 생	1) 부모, 2) 호주, 3) 동거자, 4)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원 또는 기타 사람	본적지의 시·구·읍·면장
기 아	관할 시·구·읍·면 장	〃
사 망	1) 호주, 2) 동거하는 친족, 3) 기타 동거인, 4) 건물,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
여행자 또는 무연고사망자	관할 시·구·읍·면 장	〃
혼 인	부 또는 처	〃
이 혼	부 또는 처	〃

戶籍申告나 人口動態申告는 法으로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국민에게 의무화하고 있고 이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申告에 관하여 벌칙을 가하고 있다. 즉 호적신고의 失期申告에는 과태료 300 원, 인구동태의 실기신고에는 5,000 원 이하 또는 6 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인구동태 사건 종류별 법정신고일은 다음과 같다.

출생 : 14 일 이내

사망 : 10 일 이내

결혼 : 결혼 성립과 동시

이혼 : 이혼 성립과 동시

한편 申告義務者の 戶籍 및 人口動態申告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戶籍申告 및 人口動態 申告 樣式이 1970 년 1 월부터 단일화 되어, 신고의무자는 특수복사지 2 枚 1 組로 된 단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윗장인 甲紙는 法院으로 제출되고, 甲紙에 의하여 복사된 아랫장인 乙紙는 上級 行政機關을 통해 경제기획원에 제출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人口動態申告는 호적신고와 함께 행정단위인 시·구·읍·면에서 수집되고, 통계기관

인 경제기획원 조사통제국에서 편집 및 공포된다.
이 과정에 인구동태통계의 주 이용자인 보건사회부는
전혀 관여되어 있지 않다.

3. 人口動態申告 水準

法規에 근거를 둔 의무적 신고제도가 우리나라에
생긴 것은 1915년 4월 1일 民籍法 일부개정과
1915년 8월 7일의 관통첩 이후로 볼 수 있다.
이 法の 개정을 통하여 과거의 戶口調査式 方法이
지양되었고, 1938년에서 1942년 기간에 신빙도 높
은 인구동태통계가 생산되었다.

그러나 1945년 8·15해방 및 大韓民國 정부 수
립 이후 현재까지 우리는 신빙도 높고, 이용 가능한
인구동태통계를 갖지 못하였다. 인구동태신고 수준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경제기획원이 집계 발표한 1966년 당년신고율은
출생 34.4%, 사망이 42.2%였고, 가족계획연구원이
조사한 1969년 9월 - 1971년 8월 2년간에 발생
한 출생의 신고율은 도시에서 46%, 농촌에서 32%

였고, 사망은 도시에서 58%, 농촌에서 47%에 불과하였다.

人口動態 統計의 생산에 이용되기 위하여 인구동태 신고율은 9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현재까지의 신고율은 너무나 낮은 것이다.

특히 법으로 규정된 법정기한내 신고율은 출생의 경우 도시에서 15%, 농촌에서 8%에 불과하며, 死亡은 도시에서 29%, 농촌에서 13%였다.

出生申告는 대부분 학령기에 도달하기 까지 이행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出生이 일어난 해에 거의 대부분 신고되어야 한다.

死亡의 경우도 호적에 올라 있는 한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사망신고를 하지만 통계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신고자료는 당년도의 높은 신고율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부진한 申告의 대부분은 지연 신고에 기인된 것이다. 지연신고의 이유는 출생 및 사망이 각기 다르다.

출생신고 지연의 주요 이유는 作名,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고 하겠다. 바쁘다. 수속이 복잡하다. 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 혼인 미신고 등을 들 수 있다.

사망신고 지연 이유는 주민의 인식 부족 이외에 신고 자체가 고인에게 불효가 된다. 재산상속의 문제 미해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신고지연의 주요 이유는 신고법정기한에 대한 주민의 희박한 준법정신, 미신고와 기타 고루한 인식,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태성, 신고 자체가 직접적 이득을 가져오지 않는다. 등의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문화적 퇴습과 밀착되어 있다.

4. 本 研究事業의 性格

부진한 人口動態統計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주무부처인 경제기획원을 위시하여 각종 연구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최종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가족계획연구원은 1971년 9월 - 1973년 2월의

18개월간 전국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조직망을 활용해서 인구동태조성원을 투입하여 인구동태 신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욕적 Action Research Project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성과는 현재 분석중에 있으나, 이 연구가 우리나라 인구동태신고 개선에 있어 획기적 전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충북 보은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本 研究事業은 25개 지역 연구사업에서 얻을 수 있던 값진 경험을 토대로 1개 지역에 인구동태 신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단시일에 이용가능한 人口動態統計가 생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신고율을 향상시키며, 이 통계를 郡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이용케 하려는 것이며, 이 研究成果가 만족한 경우 이러한 형태의 郡單位 인구동태개선사업이 他郡으로 파급될 수 있을 것이다.

郡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研究事業이 갖는 利點은 이 研究成果를 그대로 現實에 적용시킬 수 있고, 연구사업 추진에 있어 体系的 行政支援과 地域

社會 資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報恩郡을 事業地域으로 선정함에 있어 報恩郡守님의 積極적 호응은 이 研究事業의 成功적 수행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 研究事業이 갖는 다른 주요 성격의 ²⁰한나는 요 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는 새마을사업의 근본취지 와 인구동태신고 개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 에 이 연구사업을 새마을사업의 일부로 포함하여 추 진해 보자는 것이다.

새마을사업은 소득을 증대시켜 잘 살아 보자는 사 업이며, 정신기조는 퇴폐적이며 고루한 정신기반의 혁 신이다.

인구동태 신고는 우리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인 出生, 死亡, 結婚 등의 사건을 법적문서로 남기는 절차이다. 이 신고는 법적으로 국민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국민은 법으로 정한 날까지 신고하지 않으며, 그럼으로써 실제 나이와 호적상 연 령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허다

하게 사회적 문제 및 모순이 야기된다.

그러므로 인구동태신고 개선을 통하여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밀지 않고 합리적 사고방식을 갖도록 하는 사업은 새마을 사업의 주요 부분이 될 것이다. 지연신고 또는 미신고와 밀착된 미신적이며 고루한 인습은 새마을 사업을 통하여 한 마을에서 완전히 추출되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고루하고 미신적 인습은 한 마을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인사를 위시한 협동적 노력없이 타파되지 않기 때문에 전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계획에 입각하여 이 연구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이 研究事業은 1973년 4월부터 착수되어 보은군에서 인구동태신고 개선이 완전한 수준에 도달되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연구사업을 위해 6명의 전담조성원이 보은군에 배치되어 활동하게 된다.

第 2 章 造成員의 活動

1. 事業 目的

이 研究事業은 특정 지역에 집중적 노력을 경주하여 단시일에 신고를 통하여 완전한 가까운 인구동태통계를 생산하는 항구적 제도확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事業의 目的은 다음 4개로 세분될 수 있다.

1) 특정 농촌지역에 인구동태신고를 위한 집중적 노력을 투입하여 인구동태신고를 통하여 완전한 가까운 인구동태통계를 생산한다.

2) 우리나라 인구동태신고 개선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강구할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3) 정확히 수집된 인구동태 자료를 활용하여 관내 주민의 보건수준 측정과 보건활동을 향상시킬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4) 보건조직망을 통하여 항구적으로 개선된 인구동태통계 수집제도를 확립할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人口動態 申告造成員은 이들 세부 목적을 달성함에

기여하는 일선요원이며, 우리나라 인구동태 개선의 개척자적 위치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2. 活動 目標

造成員의 활동목표는 담당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구동태 사건(出生, 死亡, 結婚, 離婚)을 발생 즉시 파악하고, 이들 사건의 법정기한 내 또는 비교적 단기간에 신고를 이행시키는 것이다.

이 活動目標을 달성함에 봉착되는 저해요인은 다음 두 측면에서 야기될 수 있다.

1) 주민의 측면에서 주민의 人口動態 申告에 대한 낮은 關心과 認識水準

2) 주관부처가 갖는 문제 즉 人口動態統計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는 法院의 감독하에 戶籍申告가 이루어지고, 경제기획원은 인구동태자료의 수집 책임을 맡고 있으나 現地에서의 자료수집이나 이의 개선을 위한 要員을 갖지 못하고, 申告를 담당하는 市・區・邑・面 사무소 직원은 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열의도 부족하고 직원수도 부족하

다. 등의 문제가 있다.

造成員은 이들 신고개선 저해요인을 해소시켜 신고율을 신속히 개선시키는 데 活動目標를 두어야 한다.

3. 活動地域 및 對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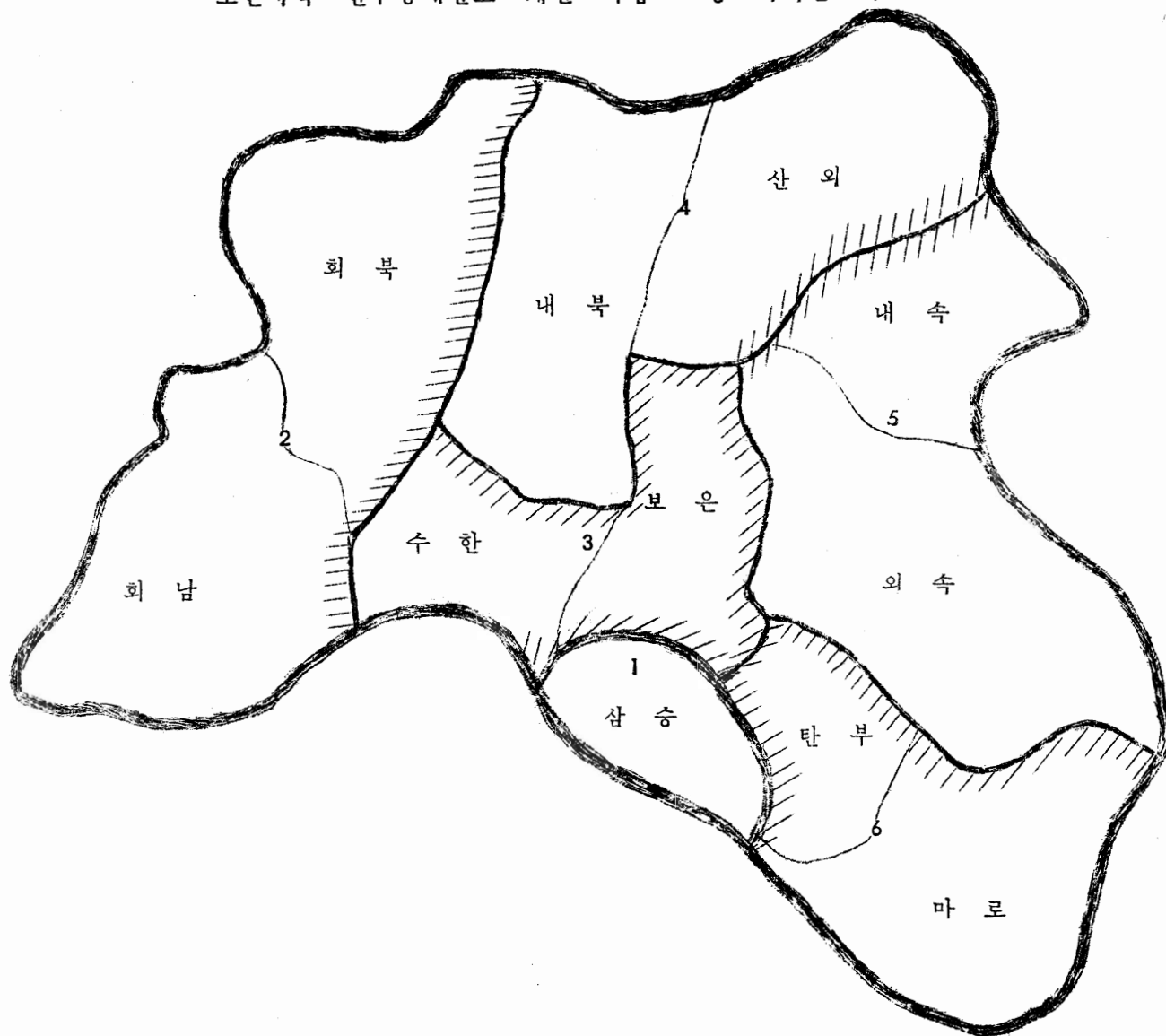
造成員이 활동할 지역은 보은군을 교통, 地勢, 面積, 人口 등을 고려하여 6개로 구분되어 있다.

책임조성원 1인을 보건소에 주재하여 타 조성원의 업무를 지도 및 조정하면서 삼승면 1개면의 조성활동을 담당한다.

보은군내 6개 조성활동 지역은 다음 도표와 같다. 책임조성원을 제외하고 일반 조성원은 2개면에 1인씩 배치된다.

조성원 당 담당지역 및 인구는 다음 표와 같다.

보은지역 인구동태신고 개선 사업 조성 지역별 지도



지 번	면 명	리 수 (리·동장수)	면 적 (㎡)	가 구 수	인 구
1	삼 송	11 (17)	28.61	1,534	8,794
2	제 회 회	38 (58) 20 (32) 18 (26)	131.41 71.88 59.53	2,825 1,747 1,078	16,827 10,351 6,476
3	제 보 수 은 한	37 (52) 22 (34) 15 (18)	84.42 43.00 41.42	4,680 3,548 1,132	27,049 20,368 6,681
4	제 내 산	44 (46) 26 (26) 18 (20)	137.87 78.18 59.69	3,108 1,860 1,248	18,799 11,054 7,745

지 역 호 번	면	명	리 수 (리·동장수)	면 적 (km ²)	가 구 수	인 구
5	계		22(25)	119.58	1,990	11,622
	내	속	13(14)	89.76	1,234	7,393
	외	속	9(11)	29.82	756	4,229
6	계		27(35)	94.77	3,355	19,311
	마	로	15(19)	62.86	1,913	10,898
	탄	부	12(16)	331.91	1,442	8,413
	계		179(233)	596.72	17,492	102,413

자료: 1970년 인구센서스 속보

造成員의 活動對象은 담당지역 내에서 발생한 出生, 死亡, 結婚, 離婚 등의 발생 과목과 이들의 조속한 신고 이행이다. 그러므로 각 조성지역별로 연간 발생될 수 있는 人口動態 事件의 數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추정근거 (연간)

出生率 3%

死亡率 1%

結婚 및 離婚 1%

地域別 推定發生數 (연간)

地域番號	人 口	出 生	死 亡	結婚및 離 婚	計
1	8,800	270	90	90	450
2	16,800	510	170	170	850
3	27,000	810	270	270	1,350
4	18,300	540	180	180	900
5	11,600	360	120	120	600
6	19,300	570	190	190	950
計	102,300	3,060	1,020	1,020	5,100

보은군에서 연간 발생할 수 있는 인구동태 사건수는 5,100 건이며, 이중 $3/5$ 을 出生이 차지한다. 그러므로 인구동태 사건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출생이다.

지역별로 책임조성원 담당지역을 제외하고, 연간 인구동태사건 발생수는 최소 600 건 (지역번호 5)에서 최대 1,350 건 (지역번호 3)의 범위내에 있다.

이러한 지역간 추정발생건수의 차이는 담당지역 면적과 결부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번호 3 지역은 면적이 84.42 km^2 인데 반하여 지역번호 5 지역은 119.58 km^2 로써 3 지역 보다 훨씬 광대하다. 그러므로 3 지역의 연간 추정발생수는 높으나 가구가 밀집되어 있어 조성원의 활동이 비교적 용이한 반면, 5 지역은 이와 반대적 특성을 갖고 있다.

조성원 당 담당지역 및 대상인구는 이러한 제조건을 고려하여 업무량의 균등화를 기하려고 하였다.

한편 活動對象이 되는 人口動態 事件은 1973년 1월 이후 발생한 것이며, 이전 발생 事件에 대하여 특별한 신고권장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造成員의 活動對象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 人 口

본 연구대상이 되는 인구는 常任人口를 의미한다. 상주인구란 과거 1개월 이상 살았거나 앞으로 1개월 이상 거주할 자를 말한다.

따라서 상주인구란 다리 밑에서 살거나 움막에서 살거나 사는 장소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조성지역에 거주하는 상주개념에 합당한 사람은 모두 活動對象人口가 된다.

그러나 活動對象에서 제외되는 인구는 외국인, 군기관 및 경찰구치소 수감자이며, 영내거주 군인은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사업 대상 인구에서 제외된다.

(2) 出 生

혼인 중 또는 혼외의 모든 出生이 포함된다. 다만 상주인구가 아닌 자의 출생은 본 조성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3) 死 亡

死亡 역시 出生과 같이 상주인구의 사망만을 포함한다.

死亡은 사망시 연령 특히 영유아의 사망을 세분해서 初生兒 死亡, 新生兒 死亡, 영아死亡 등으로 구분한다.

初生兒 死亡은 出生率 ³⁹ 1 주 (7 일) 이내의 사망, 新生兒 死亡은 4 주 (28 일) 이내 사망, 영아 사망 1 년 이내 사망을 말한다.

造成活動에서 특히 많은 발견 누락이 야기되는 것은 初生兒 死亡 및 新生兒 死亡으로써 이들 사망의 발견을 누락하면 出生과 死亡 각 1 件 씩을 누락시키게 되며, 전체적으로 추정발생수에 비하여 낮은 발견율을 나타내는 주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조성활동에서 初生兒 및 新生兒 死亡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4) 婚 姻

결혼에는 정식으로 합법적 결혼식에 의하여 이

루어진 결혼은 물론 이러한 절차없이 상주개념에 합당한 인구가 사실상 혼인상태에 있거나 동거 또는 공동생활의 목적을 갖고 가족형태를 이루고 있는 상태도 포함시킨다.

결혼일은 합법적 결혼의 경우 결혼식 날, 이러한 절차가 없는 동거형태의 사실혼은 그 발생초일로 한다.

(5) 離 婚

이혼 역시 婚姻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이혼 상태에 있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나, 합의 이혼인 경우 이혼합의가 이루어진 날, 소송이혼인 경우 이혼조정 성립일을 이혼 발생일로 한다.

가족계획연구원이 1971년 4월 - 1973년 2월의 18개월간 전국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인구동태 신고 조성사업에서 파악된 결과에 의하면, 발생파악에 많은 누락이 있던 人口動態 事件은 初生兒 死亡, 新生兒 死亡, 結婚, 離婚 등이었다. 그러므로 특히 이들 누락되기 쉬운 사건의 발견에 세심한 성립일을

이 혼발생일로 한다.

한편 발견된 人口動態 事件의 신고이행 및 신고결과를 확인함에 있어 봉착하는 문제가 있다.

造成地域 내에 거주하는 상주인구는 本籍地를 현주소와 동일 지역 또는 동일 面인 경우와 本籍地를 타지역 또는 他面에 둔 転入者로 구분될 수 있다.

관습적으로 戶籍申告는 本籍地에서 한다. 그러므로 他地域에 本籍을 둔 現住者는 人口動態 事件의 申告여부는 本籍地에 조회하지 않는 한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難點을 해결하고 신고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本籍地가 타지역인 경우에도 현거주지에서 신고토록 권장한다. 현거주지에서 신고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현거주지에서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호적신고서의 枚數가 1枚 많아진다.

그러므로 모든 人口動態 事件은 현거^지에서 신고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組成원이 발견한 人口動態 事件이 신고되고, 面 事務所에서 호적확인되면, 이 사건에 관한 組成원의 活動 임무는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다.

신 고 지 구 분	기 간 내		실 기		
	호 적 신 매 고 수	동 태 신 고 매 수	호 적 신 고		동 태 신 고 서 매 수
			신 고 서 매 수	실 기 이 유 서	
본 적 지 신 고	1	1	2	1	1
본 적 지 외 신 고	2	1	3	1	1

4. 造 成 員 活 動 方 法

造成員의 活動方法은 人口動態 事件의 발견과
신고 이행의 두 活動對象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나
이들 두 對象에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活動方法이 몇
개 있다.

(1) 地域協助網의 구성

人口動態 事件을 발견하고 신고이행을 위해
造成員이 정기적으로 빈번히 가구를 방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격이나, 造 成 員 當

광활한 담당지역 및 많은 인구, 非經濟 및 非能率性 등의 이유로 조성원 자신이 사업지역 내 전가구를 대상으로 사건을 발견하고 신고이행을 위해 방문해서는 안된다.

造成員은 자신의 가정방문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를 지역사회 資源의 活用에서 얻을 수 있다. 즉 한 마을 실정에 밝고 타인에게 영향이 큰 사람들은 조성원 자신의 活動과 같거나 더 효과적으로 인구동태 사건의 발생을 파악하고 신고이행을 권장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造成員은 面 또는 里單位, 자연부락단위로 자신의 사업목적의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地域協助網을 구성해야 한다.

지역협조망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1) 面長 및 面職員, 특히 부락담당직원 및 戶兵係 직원
- (2) 面 保健要員 (가족계획, 모자보건, 결핵요원)

- (3) 里長, 어머니회장, 자원지도자
- (4) 의사, 약사, 한의사 및 기타 의료요원
- (5) 농촌지도소, 우체국 직원
- (6) 각급 교육기관 교사
- (7) 이용사 및 미용사
- (8) 기 타

보은군 전체의 이들 地域協助者數는 다음과 같다.

보건관계 요원 (98 명)

보건소 면보건요원 34

사립 의료요원 64

관계기관 (183 명)

농촌지도소 47

우 체 국 136

각급교육기관 교사 (183 명)

국민학교 475

중학교 120

고등학교 37

지역사회지도자 (615명)

리 장	234
어머니 회장	175
자원 지도자	206

이 . 미용실 (91개소)

이 이외에 구장 및 반장을 위시한 여러 계층의 지역협조자를 확보할 수 있다.

造成員은 이들 인사로 구성된 협조망을 잘 구성하고 체계적인 협조를 얻기 위하여 里單位로 직책, 성명, 주소 등과 방문예정일을 표시한 地域協助網 구성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이들 인사를 방문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야 한다.

각 지역협조자는 각 마을에서 일어난 人口動態 事件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신고이행을 권장하게 될 것이다.

각 지역협조자에게 다음 양식 (인구동태 양식 8) 의 인구동태발생전표가 배부될 것이며, 조성원은 각 지역협조자 방문시 이 전표를 받고 해당가구를 방문

하여 신고이행을 권장한다.

인구동태발생전표

구 분	발 생 일	가구주성명	주 소
출 생	197 년 음 월 일 양		
사 망	〃 〃		
혼 인	〃 〃		
이 혼	〃 〃		

(인구동태 양식 8) 작성일 : 197 년 월 일

직명 :

성명 :

(2) 계몽인쇄물 및 기타 媒体

계몽인쇄물은 인구동태 신고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포스타 1종, 계몽리프렛 2종이 연내에 제작되어 각 가구 또는 마을에 배부될 것이다.

한편 지역 협조자의 적극적 지원을 얻기 위한 인사장 형태의 인세물이 각 지역 협조자 앞으로 가족계획 연구원장 명의로 송부될 것이다. 이 인사장에는 사업의 취지, 법정기한내 신고에 대한 주민의 인식 제고, 신고이행 권장, 조성원에 대한 사업 협조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인사장은 조성원이 사업지역에 배치됨과 동시에 각 협조자 앞으로 우송될 것이다.

이 외에 郡에서 발간하는 郡公報(2,000枚 발행)와 엠프(38대) 및 스피카(2,793대)도 주민의 신고의식의 향상과 지역 협조자의 적극적 참여에 큰 도움을 주는 주요 媒体이다.

(3) 行政体系의 協助

郡 및 各 面 單位로 행정적 측면에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郡守 주재하의 面長會議, 面長주재의 里長會議는 이 사업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1973년 3월 11일 650명의 관내 지도적 인사가 한 자리에 모인 보은군정추진대회에서 이 사업의 추진에 관한 특별강연을 가졌다. 이 자리의 연사로 가족계획연구원 연구부장 및 제1연구실장이 참석하였다.

행정적 측면에서의 지원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造成員 자신도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적 협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 人口動態 事件의 発見

인구동태 사건의 발견은 지역 협조망이 잘 구성되고 활용되면 이들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인구동태 사건을 발견하기 위해 가 구방문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마을에 들어가면 동네 부인, 어린 아이들 기타 사람들에게 인구동태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한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동네 사정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점이 많으며, 사건발견에 큰 도움이 된다.

나. 申告권장

신고권장을 위해 造成員은 가정방문을 해야 한다. 가정방문시 里長과 동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정방문시 미신고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미신고 이유로 출생의 경우 作名 또는 시간이 없어 못 한다는 경우 이름을 지어주고 신고를 대행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뚜렷한 이유없이 자라는 것을 보고 하겠다고 하는 경우 신고의식을 높여 동기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망신고의 권장을 위한 가정방문시 엄격한 예의를 지키고, 정중한 대화로 상가의 슬픔을 가라 앉혀야 한다.

혼인신고를 못하여 출생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 경우 먼저 또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혼인신고를 하도록 한다.

가정방문시 신고를 권장하는 대상은 가급적 가구주로 한다. 신고이행의 결정권은 대부분 가구주가 갖고 있다.

모든 인구동태사건은 법정기한내 신고를 권장하되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며, 이 기간내에 조성원은 수시 가정문을 해야 하며 里長을 위시한 마을지도자의 신고권장 협조를 얻어야 한다.

5. 申告確認

가. 戶籍確認

2週 1回 面事務所에서 申告 여부를 戶籍簿에서 확인해야 한다.

本籍地가 他地域인 경우 現居住地에서 신고이행토록 하나, 부득이 本籍地 申告를 한 경우 그 가구주에게서 호적초본 1통을 받아 확인하거나, 住民登錄簿에 出生兒가 올라 있는지 死亡者는 삭제되었지 등을 확인한다.

어느 경우이든 申告 여부는 응답 결과가 아닌 객관적 증거에 기초를 두어 확인해야 한다.

나. 住民登錄 確認

住民登錄 確認은 活動地域내의 인구 転出入 상

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本 研究事業이 착수됨과 동시에 보은군 관내 전주
민의 주민등록이 완전히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
후 轉出入 역시 완전하^에 가깝게 신고될 것이다.

그러므로 住民登錄에 나타난 轉出入 확인으로써 活
動地域내 人口移動이 파악될 것이다.

人口移動은 事業 対象人口를 규정하는데 중요하다.
轉出된 人口는 事業対象에서 제외^되며, 轉入人口는 轉
入日로부터 새로운 事業対象이 되는 것이다.

人口移動은 造成員의 活動成果를 평가하는 基礎人口
의 추정에 중요하다, 이상적으로 한다면 조성원 자
신이 가구조사를 통하여 이동인구를 파악해야 할 것
이나 업무량이 과중하여 주민등록 확인으로 대치한
것이다.

그러므로 造成員은 2週에 1회 面事務所를 방문하
여 活動地域에 轉出入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第 3 章 家 口 調 査

1. 家口調査의 目的

造成員이 活動地域에 배치되면 그 地域內 전가구의 호별방문을 통한 家口調査를 실시한다. 家口調査 期間은 1973年 4月 - 6月の 3개월이다.

家口調査의 目的은 造成活動의 대상이 되는 家口 및 家口員에 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 자료를 造成員 活動의 기초로 삼기 위한 것이다.

가구 조사를 통하여 造成員은 活動지역의 地勢, 家口分布, 交通, 生活狀態 등에 익숙해질 수 있다.

한편, 家口調査를 위해 각 마을을 방문할 때 그 마을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인사 예컨대 里長, 구·반장, 어머니회장, 자원지도자, 새마을 지도자, 4-H클럽회장 등을 만나서 이 사업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고, 이들과 친숙해질 수 있다.

이 기회에 이들에게 인구동태발생전표 (인구동태 양식8)를 전하여 다음 방문시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인구동태사

건을 기록해 두고, 신고이행을 권장해 주도록 부탁한다.

造成員은 지역협조자의 명단 및 주소를 자연부락 또는 里別로 작성하여 地域協助網을 구성해야 한다.

2. 家口調査 実施要領

家口調査는 가구를 방문하여 가구실정을 잘 알고 있는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처를 응답자로 하여 가구 현황기록표 (인구동태 양식 4)의 제사항을 질문하면서 기입한다.

家口調査에 앞서 造成員은 面事務所에 비치된 전 주민등록카드를 가구현황기록표에 移記한다. 移記事項은 가구주성명, 현주소, 호적상 호주성명, 본적, 가구원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호적상의 생년월일 등이다. 移記시 연필을 사용한다.

주민등록카드에서 移記된 가구현황기록표를 갖고 面事務所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부터 家口調査를 실시한다.

家口調査 과정에서 주민등록에 올라 있지 않은 가구원은 추가하고, 주민등록에 있는 가구원이 실제로 거주

가 구 현 황 기 록 표

<앞면>

① 지역번호 _____ 가구번호 _____

작성년월일 : 197 년 월 일

② 가 구 주 성 명	③ 현 주 소	④ 호적상호주성명	⑤ 본 적
	시 구 로 동 가 번지		시 구 로 동 번지 호
	도 시 군 읍 면 리 번지		도 시 군 읍 면 리 번지

⑥ 가구원 성명	⑦가구주 와의관계	⑧성별	⑨ 생 년 월 일	⑩ 호적상의 생 년 월 일	⑪ 차 이	⑫ 혼인관계	⑬ 학 력	⑭ 직 업	가 구 원 의 사 회 동 태				
									⑮ 전입일자	⑯ 전출일자	⑰ 전출입지주소	⑱ 주민 등록확인	⑲ 비고
		남,여	년 양 월 일	년 월 일									
		남,여	년 양 월 일	년 월 일									
		남,여	년 양 월 일	년 월 일									
		남,여	년 양 월 일	년 월 일									
		남,여	년 양 월 일	년 월 일									

※ 직업은 구체적으로 기록할것
만 14세 이상

가 구 원 의 자 연 동 태

< 뒷 면 >

	성 별	발 생 일 자	신고여부 (일자)	비 고			㉔ 1 차방문	㉕ 2 차방문	㉖ 3 차방문	㉗ 4 차방문
㉔ 출 생				모 의 년 령 세 만	출 생 장 소	응 답 자 미 신고이유				
				모 의 년 령 세 만	출 생 장 소	응 답 자 미 신고이유				
				모 의 년 령 세 만	출 생 장 소	응 답 자 미 신고이유				
㉕ 사 망				사망자의 년령 년	사인 (진단)	응 답 자 미 신고이유				
				사망자의 년령 년	사인 (진단)	응 답 자 미 신고이유				
㉖ 혼 인				당사자의년령(남) 년 월	당사자의년령(여) 년 월	응 답 자 미 신고이유				
				당사자의년령(남) 년 월	당사자의년령(여) 년 월	응 답 자 미 신고이유				
㉗ 이혼				당사자의년령(남) 년 월	당사자의년령(여) 년 월	응 답 자 미 신고이유				

㉘ 지난 1년간의 동태사항 (1972.1.1 ~ 1972.12.31)

인구동태종류	발 생 일 자	신고여부 (일 자)	모또는 사망자년령	사망자의 사인 (진단)	결 혼 또는 이혼 남	당사자의연령 여	결 혼기간

㉙ 가구 주의 일 반 사 항

가구주의 종 교	1) 무 2) 유교 3) 불교 4) 신교 5) 구교 6) 천도교 7) 대종교 8) 기타	생활형편	1) 최상 2) 상중 3) 상하 4) 중 5) 하상 6) 하중 7) 최하	읍. 면사무소 와 의 거 리	Km	거주지의 특성	1) 읍 2) 평 야 3) 준산간 4) 산간
-------------	---	------	--	--------------------	----	---------	--------------------------------

(인구동태 양식 4)

하지 않으면 이 가구원은 삭제한다.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상주인구 개념에 의거하여 가구현황을 파악하여 가구현황기록표를 작성한다.

이 외에 주민등록에 누락된 가구도 있다. 이런 경우 가구조사를 통해 가구현황기록표를 작성한다.

가구조사 과정에서 지난 1년 간(1972년 1월 - 12월)의 인구동태 사건의 발생 및 신고 사항을 질문하게 되어 있다. 이 자료는 本 研究事業이 시작되기 이전의 신고수준을 평가할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자세히 질문해야 한다. 이들 사항을 파악함에 있어 특히 初生兒 死亡, 新生兒 死亡의 누락이 많으니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마지막 아이를 둔 후 현재까지 터울이 2년 이상인 때 혹시 이들 사망이 있었는지 피임을 하는지를 재차 질문해야 한다.

이 외에 가구의 경제상태 및 기타 사항도 있으니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정확히 기입한다.

주민등록카드에서 移記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사항은 응답결과를 직접 불펜으로 가구현황기록표에 기

입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1개리의 가구현황기록표가 완전히 작성되면, 연필로 기입된 것을 모두 볼펜 또는 잉크로 정서한다. 가구현황기록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조성원 자신의 활동자료로 이용하고, 1부는 가족계획연구원으로 송부한다. 가구조사는 里長과 함께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里 단위로 家口調査가 완료되면, 다음은 가구현황요제표(인구동태 양식 5)를 작성한다. 가구현황요제표는 한 눈에 里단위의 가구현황을 알 수 있도록 요약된 것으로서 造成員이 人口動態事件의 발견 및 신고 조성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특히 가구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임신부인 또는 출산가능한 부인을 가구현황요제표에 표시될 수 있어 출산 전후에 해당 가구를 방문하기 위한 조성원의 活動計劃을 수립하는데 유용하다.

3. 家口現況記錄^表作成要領

① 지역번호 : 조성원이 담당하고 있는 조성활동 지역 번호를 기입한다.

가구번호 : 가구번호는 모든 가구를 고유번호로 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매겨진다.

○-○-○○○

(面) (里) (일련번호)

즉 모든 가구는 5개의 숫자로 표시된다. 첫째는 面을, 둘째는 法定 里를, 세째는 里내 가구의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일단 각 가구에 가구번호가 부여되면 가구전출을 하지 않는한 없어질 수 없다. 전출의 경계선은 面 단위로 한다. 外地에서 輸入^한되어 온 家口에는 里내 일련번호의 최종번호 다음의 번호를 부여한다.

작성년월일 : 가구조사의 기준일은 197³년 3월 31일 현재로 하여 이 시점의 가구현황을 기입한다. 그러므로 1차 가구조사시의 작성일은 1973년 3월 31일이 된다.

그러나 ^현輸入된 家口의 현황기록표를 작성할 때는 실제 작성일을 기입한다.

② 가구주 성명 : 그 가구의 생계를 사실상 영위하고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원을 가구주로 한다. 가구주는 호적상 호주를 의미하지 않는다.

③ 현주소 : 현 거주지의 동, 리, 번지, 호수까지 자세히 기입한다. 동일 주소에 2가구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가구번호는 달라야 한다.

④ 호적상 호주성명 : 가구주가 아닌 호적에 올라 있는 호주성명을 기입한다. 주민등록부에서 移記하는 것이 정확하다.

조차가구가 현 거주지의 주민등록에 올라 있지 않으면 주민등록증에서 移記한다.

⑤ 본적 : 현주소와 본적의 구별을 잘못하는 주민이 많다. 그러므로 주민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본적을 移記한다.

⑥ 가구원 성명 : 상주인구 개념에 따라 과거 1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앞으로 1개월 이상 거주할 가구원만을 대

상으로 그의 성명을 기입한다. 여기에는 가족이지만 군에 입영중이거나 의지에서 유학 또는 장기 거주 목적으로 나가 있는 자는 제외된다. 그러나 가족은 아니나 동거하고 있는 타식구가 있으면 이를 가구원으로 포함시킨다.

가구원의 성명은 대부분 하나이나, 호적에 올라있는 성명과 집안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호적(또는 주민등록)에 올라있는 이름을 기입한다.

가구현황기록표에 기입할 가구원은 주민등록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써 상주인구 개념에 의거하여 빠짐없이 기입해야 한다.

⑦ 가구주와의 관계 : 각 가구원과 가구주와의 관계는 가구주를 맨 위에 그 다음에 처, 장남, 차남, 장녀 등으로 기입한 후 부, 모, 기타 가족, 동거인 순위로 기입한다.

⑧ 생년월일 : 실제 출생한 년월일을 기입해야 한다. 농촌에서 대부분 ^이배를 정확히 알고 있으므로 ^이배를

물어 出生 年을 파악하고, 出生 月日은 음력인지 양력 인지를 확인 하여 기입 한다.

⑩ 호적상 생년월일 : 현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 등록부에서, 현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에서 移記하고, 이것도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정확한 응답을 통해 기입한다.

호적상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과 다를 수 있으며, 다른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과거의 호적신고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⑪ 차이 : 실제 생년월일에서 호적상 생년월일을 빼 낸 차이를 기입 한다. 그러나 실제 생년월일을 양력 또는 음력으로 통일하고 난후 이 차이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造成員은 이 란을 공란으로 남겨 둔다.

⑫ 혼인 관계 : 15세 이상자(15세 이하에 기혼자가 있는 경우 이 가구원의 혼인관계는 표시해야 함)의 결혼상태를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별거 포함)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14 세 미만자는 공란으로 남겨 둔다. 유배우는 정
식결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모든 부부를 포
함한다. 업무나 군복무 관계로 일정기간 별거하고 있
는 상태도 유배우에 해당한다.

㉓ 학 력 : 무학, 국민, 중등, 고등, 대학 등으로 5 구
분해서 기입한다. 이 구분은 정규학교 교육만을 기준
으로 하며, 중퇴자는 그 교육수준을 이수한 것으로 간
주한다. 현재 재학자는 재학중임을 명시해야 한다.

㉔ 직 업 : 14 세 이상자의 직종 및 직위를 자세히
기입한다. 재학생은 학생이라고 표시한다.

14 세 미만자는 공란으로 둔다.

가구의원 의 사회동태

㉕부터 ㉗까지 가구조사시 공란으로 남겨둔다. 가구
현황기록표가 작성된 후 그 가구에 住民登録 확인에
의거하여 가구의원 輸出入이 있을 때만 기입한다.

전 가구의원 輸出한 경우에는 후술되는 인구동태발생
(사회동태) 보고 (인구동태 양식 2) 와 함께 가구현황기

록표를 가족계획연구원에 송부한다.

⑮ 전입일자 및 ⑯ 전출일자 : 가구원 각인을 대상으로 이들 두 형태의 인구이동 중 해당되는 1개만을 택하여 일어난 년월일을 뒷란에 기입한다.

전출입의 경계선은 면으로 한다. 面 경계선을 넘어 타면에서 온 것은 転入이며, 이 경계선을 넘어 타면으로 간 것은 転出이다.

⑰ 전출입지 주소 : ⑮~⑯에서 전출 또는 전입이 구분되기 때문에, 전입인 경우 転入前 住所, 転出인 경우 転出地 住所를 기입한다. 住所는 道, 郡, 面 또는 市까지만 기입하며, 그 이하는 생략한다.

⑱ 주민등록 확인 : 전출입을 주민등록에서 확인한 년월일을 기입한다.

⑲ 비 고 : 특기할 사항이 있을 때만 기입한다.

가구원의 자연동태

㉔에서 ㉗까지는 가구조사시 공란으로 남겨둔다. 이들 란은 가족계획연구원에서 造成員의 活動報告를 받

고 해당 사항을 기입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造成員은 이들 란을 기입할 필요가 없다.

㉓ 지난 1년간의 동태사항: 本 研究事業이 착수되기 이전 1년간의 인구동태 사건의 발생 및 신고동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정된 란이다.

1972년 1월에서 12월의 12개월간 발생한 모든 인구동태 사건을 가구조사시 파악하여 기입해야 한다.

인구동태 종류: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4종이 포함된다.

발생일자: 실제로 발생한 년월일을 음력 또는 양력 인지를 구분하여 어느 하나를 기입한다.

신고여부: 일어난 동태사건의 신고여부를 기입한다.
미신고인 경우 「미신고」로, 신고한 경우 신고 年月을 기입한다.

모 또는 사망자 연령: 결혼 또는 이혼인 경우 관련이 없는 란이기 때문에 사선을 긋는다.

출생인 경우 產母의 출산시 만연령을 기입한다.
사망인 경우 사망자의 사망시 만연령을 기입한다. 初

生兒 死亡, 新生兒 死亡은 生存期間을 月 및 日로
기입하고, 영아사망은 月로 기입한다.

사망자의 사인 : 이 란은 사망인 경우에만 기입되며,
기타 사건인 경우 사선을 긋는다.

死亡原因은 응답자가 말하는 死因과 의사의 진단에
의한 死因이 있다. 사망자의 진단이 의사(한 의사, 치
과 의사 제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진단)에 ○표
하여 그 진단명을 기입한다.

사망자에 대한 의사진단이 없는 경우 응답에서 얻은
死因을 기입하되 (진단)을 =로 긋고 해당란에 그
死因을 기입한다.

결혼 또는 이혼 당사자의 연령 : 결혼 또는 이혼의
사전에만 관계되기 때문에 기타 사건인 경우 사선을
긋는다. 또한 결혼 또는 이혼인 경우도 남녀 각각이
별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란은 사선
을 긋는다.

결혼기간 : 이혼인 경우만 결혼일로 부터 이혼시까지
의 기간을 年으로 기입한다. 1년 이내인 경우 月로

표시한다.

㉔ 가구주의 일반사항 : 이 사항은 가구주에게만 특별히 질문하는 항목으로써 가구조사시 기입되어야 한다.

가구주의 종교 : 종교가 없는 경우 1) 무에 ○표하여 있는 경우 해당란에 ○표하되, 기타에는 그 종교명을 기입한다.

생활형편 : 그 가구의 생활정도를 최상에서 최하까지 7개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 구분의 객관적 기준은 없다. 造成員이 그 지역 실정에 비추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해당표에 ○표한다.

4. 家口現況要計表 作成要領

家口現況要計表 (인구동태 양식 5)는 家口調査시 作成된 가구현황기록표에 의거 작성한다. 1개 法定里의 가구조사가 완료되면, 이 자료를 토대로 가구번호 순위로 해당사항을 기입한다.

① 가구번호에서 ⑤ 본적까지는 가구현황 기록표에

가 구 현 황 요 계 표

지역번호

작성년월일 : 197 년 월 일

① 가구번호	② 가구주성명	③ 가구원수	④ 현 주 소	⑤ 본 적	⑥ 가임부수	⑦ 임신부유무 (임신기간)	⑧ 비 고 ※ 출생, 사망 및 전출입사항기재

[인구동태양식 5]

서 그대로 移記하되 현주소는 里名과 번지만을 기입하고, 본적은 현주소와 같은 경우에 동일이라 표기하고, 현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자세히 기입한다.

⑥ 가임부수 : 한 가구의 가구원 중 15 ~ 49세의 有配偶婦人 수를 기입한다. 이들은 출산가능한 대상이기 때문에 出産 여부를 주의 깊히 관찰해야 한다.

⑦ 임신부 유무 : 가구조사 과정에서 임신부가 파악되면, 이 부인의 출산예정일을 알아서 기입한다. 조성원은 출산전후에 이 가구를 방문하여 신속히 출생을 파악하는 자료로 이용한다.

한편 임신부의 보건 관리를 도와주기 위해 이 사실을 面 母子保健要員에게 알려주고, 임신부에게는 面 母子保健要員을 찾아 도움을 받도록 권장한다.

⑧ 비 고 :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인구동태사건의 발생이 있는 경우 이의 발생년월일을 기입한다.

주민등록의 확인에 의해 가구 또는 가구원 전출입이 있으면, 이 사실이 일어난 년월일 및 인원수(가구원 전출입인 경우)를 기입한다.

里 또는 마을의 지도적 위치에서 활약하는 사람
예컨대 里長, 어머니 회장, 새마을지도자, 자원 지도자 등의
직명과 성명을 기입한다.

第 4 章 報 告 及 其 他 樣 式 的 作 成 要 領

1. 報 告 及 其 他 樣 式 的 種 類

보은지역 인구동태 신고개선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諸樣式은 8 種이다.

이 諸樣式은 造成員 活動을 體系化 및 能率化하고
活動成果를 精 確히 평가 및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諸樣式은 報告用과 造成員 活動을 기입 및 보관하는
保管用으로 구분될 수 있다.

	種 類	造 成 員	責 任 造 成 員
報 告 用	人口動態發生報告 (樣式 1) (자연동태)	×	-
	人口動態發生報告 (樣式 2) (사회동태)	×	-
	造成員活動 2 週間報告(樣式 3)	×	×
	人口動態申告追求카드 (樣式 6)	×	-

	種 類	造成員	責任 造成員
保 管 用	家口現況記錄表 (樣式 4)	×	-
	家口現況要計表 (樣式 5)	×	×
	人口動態發生報告寫本 (樣式 1) (자연 동태)	×	-
	人口動態發生報告寫本 (樣式 2) (사회 동태)	×	-
	人口動態發生記錄表 (樣式 7)	×	-
	人口動態發生伝票 (樣式 8)	×	-
	造成員活動日誌 (樣式 3)	×	-

造成員 活動報告는 2週에 1회 유첨물을 첨부하여
責任造成員에게 송부하며, 責任造成員은 이를 취합하여
보건소장을 경유하여 보고한다.

定期報告日: 造成員 → 責任造成員

(매월 15일, 30일 송부) (매월 17일, 익월
2일까지 접수)

保健所 → 研究院

(매월 19일, 익월 4일 (매월 21일, 익월 6일
송 부) 접 수)

2. 記 入 要 領

가. 人口動態發生報告 (자연동태)

이 報告는 본 사업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이용된다. 출생 또는 사망 발생에 각 1매씩 작성한다.

지역번호에서 현주소란은 가구현황기록표와 동일하게 기입한다.

정보 제공자

출생 또는 사망의 발생 사실을 제일 먼저 알려 준 사람의 직명 또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기입한다.

이미 배부된 인구동태발생전표를 접수함으로써 알게된 경우 이 전표를 작성한 사람의 직명 예컨대, 면가족계획요원, 결핵요원, 모자보건요원, 里長, 面職員, 어머니會長, 자원지도자, 의사, 약사, 조산원 등의 직명을 기입한다.

직명이 없는 경우 예컨대, 어린아이, 동네 사람 등이 사실을 그대로 기입한다.

가구주 또는 산모 가족이 알려준 경우에는 가구주와

인구동태발생보고 (자연동태)

가족제 확인연구원장 귀하 작성년월일 : 197 년 월 일

지역번호	가구번호	가구주성명	현 주소

정 보 제 공 자

1. 자연동태종류 :	☐	①출생	☐	②사망
2. 발 견 일 자 :	197	년	월	일
3. 발 생 일 자 :	197	년	월	일
4. 신고여부 <	☐	했 다	신고일 : 197 년 월 일	
	☐	안했다		
< 출 생 관 계 사 항 >				
5. 모의 연령 :	__	세	성명 (	)
6. 출생아 성별 :	☐	남	☐	여
7. 출생순위 :	__	회	출생	
8. 출생장소 :	☐	①병원	☐	②자택
			☐	③기타
9. 분만개조사 :	☐	①의사	☐	②조산원
	☐	④가족	☐	⑤기타
< 사 망 관 계 >				
10. 사망자성명 :				성별 ☐ 남 ☐ 여
11. 사망자년령 :	__	만	__	세 월 일
12. 사 인				(사망장소)
	(진단명 :			)
비 고				

(인구동태양식 1)

면

조 성 원

인

의 관계를 기입한다. 조성원 자신이 가정방문 및 기타 활동을 통하여 알게된 경우에는 조성원이라고 기입한다.

① 자연동태 종류 : 출생 또는 사망 각 해당란에 X표한다. 한 가구에 2건 이상의 출생 또는 사망이 있는 경우 각 사건마다 1매 씩 작성한다.

② 발견일자 : 정보제공자에 의하여 알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인구동태발생전표를 접수한 경우는 접수일 조성원이 발견한 경우는 그 발견일을 기입한다.

③ 발생일자 : 실제로 발생한 년월일을 양력으로 기입한다.

④ 신고여부 : 이 자연동태의 발견 당시의 신고여부를 기입한다. 이미 신고한 경우 했다에 X표하고, 신고년월일을 기입한다.

안한 경우 안했다에 X표한다.

⑤ 모의 연령 : 출산 당시 산모의 만연령을 기입한다.

⑦ 출생순위 : 출생당사자가 몇 제번 아이인가를 기입한다. 특히 이전 출생중 初生兒 및 新生兒 死亡, 영아사망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포함시켜 출산순위를 기입한다. 출산순위에는 사산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⑧ 출생장소 : 기타란은 구체적으로 친정, 조산원, 등으로 기입한다.

⑨ 분만개조자 : 분만시 직접 도와준 사람을 기입한다. 자택 또는 친정에서 분만하였지만 의사나 조산원이 출산을 도와주었으면, 이들의 해당란에 X표한다.

⑩ 사망자 연령 : 사망시의 만 연령을 기입한다. 1세 미만의 사망은 월로 특히 1개월 미만 사망은 일로 표시한다.

⑪ 사인 : 의사의 진단에 의한 사망원인이 밝혀진 경우 (진단명)에 기입하고, 응답결과에 의한 사인인 경우 그 사인을 _____에 기입한다.

비고 : 이상 제사항 이외에 특기할 사항이 있을 때 이용한다.

에 對한 輸入해 로서 活動地域에 살고 있으나, 주민 등록이 안되어 轉入家口로 안되었기 때문에 가구번호를 붙일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사유를 비고란에 기입한다.

모든 발생보고는 조성원의 확인후 송부되어야 한다.

③ 발전일자와 조성원의 확인일자가 다른 경우 비고란에 조성원의 발생확인 일자를 기입한다.

出生 및 死亡의 발생이 조성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인구동태발생보고가 작성되면, 그 작성일을 보고서 상단에 있는 작성년월일란에 기입하고, 하단에 서명 날인하면, 완전한 1매의 인구동태 발생보고(자연동태)가 작성되는 것이다.

이 報告가 작성된 후 인구동태발생기록표(인구동태 양식 7)와 가구현황기록표(인구동태 양식 4)에 移記하고, 인구동태신고 추구카드(인구동태 양식 6)을 작성하여, 신고권장 사항을 기입한다.

나. 人口動態發生報告(사회동태)

이 보고에는 전출, 전입, 결혼, 이혼 등이 포함된

다. 이 보고 역시 각 사건별로 1매씩 작성한다.

① 사회동태 종류: 각 사건의 해당란에 X표한다.

② 확인일자: 전입 또는 전출의 경우 주민등록을
확인한 날짜를 기입한다.

결혼 및 이혼의 경우 호적신고를 확인한 날짜를 기
입한다.

③ (발생) 신고일자: 전입 및 전출의 경우 주민등
록에 신고한 날을 기입한다.

혼인 및 이혼의 경우 실제로 발생한 날짜를 기입한
다. 인구동태 발생보고시 혼인 또는 이혼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 안에 미신고라고 기입한다.

⑤란에는 단독이동 또는 결혼 및 이혼의 경우에만
기재한다.

전입 및 전출의 경우에 ⑤의 모든 항목을 기입한다.
결혼 및 이혼 당사자가 현거주에 거주하는 경우 ⑤의
5)란은 공란으로 둔다.

⑥ 이동의 형태: 한 가구에 2인 이상이 동시에
전입 또는 전출한 경우와 가구전체가 전입 또는 전출

인구동태발생보고 (사회동태)

가족계획연구원장 귀하

작성년월일 : 197 년 월 일

지역번호	가구번호	가구주성명	현 주소

1. 사회동태종류 : ☐ ①전출 ☐ ②전입 ☐ ③결혼 ☐ ④이혼
 2. 확인일자 : 197 년 월 일
 3. (발생) 신고일자 : 197 년 월 일 ()
 4. 발 견 일 자 : 197 년 월 일
 5. 단독이동 또는 결혼 및 이혼의 경우에만 기재
 - 1) 성명 _____
 - 2) 나이 _____ 세
 - 3) 성별 ☐ 남 ☐ 여
 - 4) 직업 _____
 - 5) 전출지 혹은 전입전 주소 _____
 6. 이동의 형태 (2인 이상의 경우에만 기재)
 - 1) 부분이동 남 ☐ 명 여 ☐ 명
 - 2) 전가구이동 남 ☐ 명 여 ☐ 명
- ※ 전 가구이동의 경우에만 가구현황표를 작성하여 별첨함.

비 고 :

(인구동태양식 2)

면 조 성 원

인

한 경우에 기입한다. 부분이동이든 전가구이동이든 이동자의 성별로 인원수를 해당란에 기입한다.

전가구가 전출한 경우에는 기 작성되어 있는 가구 현황기록표를 별첨하며, 전가구 전입인 경우에는 새로운 가구현황기록표를 작성하여 별첨한다.

< 特 殊 한 実 例 >

転入 또는 転出과 동시에 결혼이 발생하는 경우

新婦가 外地에서 결혼하기 위해 활동지역에 온 경우는 転入과 結婚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

이 경우 주민등록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입으로 취급한다. 그러므로 ① 사회동태외 종류에는 전입과 결혼에 각각 X표하고 ② 확인일자란은 공란이 된다.

新婦가 결혼하기 위해 전출한 경우도 역시 ① 사회동태외 종류에는 전출과 결혼이 동시에 각각 X표되어야 한다.

비 고 : 특기사항을 기입하되, 특히 결혼 및 이혼의 신고결과를 표시하는 란으로 활용한다.

결혼 또는 이혼의 발생보고시 신고되지 않았던 것이 이후 신고되면, 즉시 修正報告를 한다.

修正報告에도 인구동태발생보고(사회동태)양식을 사용하되, 비고란에 붉은 색으로 修正報告라고 표시하고, 이 양식에 對角線으로 사선을 긋는다. 그리고 지역번호, 가구번호, 가구주성명, ① 사회동태종류, ② 확인날짜, ③ 신고일자 ⑤의 성명만을 기입한다.

修正報告로 定期報告시 함께 보고한다.

다. 人口動態申告 追求카드

이 카드는 인구동태발생보고(자연동태)가 작성된 후 곧 작성되어야 하며, 출생과 사망에 한에서만 작성된다.

또한 이 카드는 발견된 출생과 사망이 신고될때까지 造成員이 보관하며, 신고되면 定期報告日에 이 카드를 研究院에 송부한다.

이 카드의 作成目的은 出生과 死亡의 未申告 理由를 명확히 밝히고, 신고에 미친 次要인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 양식의 기입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가구번호에서 ④ 본적은 앞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기입한다.

⑫ 정보접수 : 인구동태발생 보고의 ⑤ 발견일 자를 ⑪의 연월일에, 그 보고의 정보제공자를 이 양식 ⑪의 응답자란에 기입한다.

⑬ 1차방문 : 발생정보를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출생 또는 사망을 가정방문에 의하여 발견한 경우에 이란에 기입한다.

이 란의 ⑩ 연월일은 방문일자, ⑪의 응답자는 조성원의 질문에 응답한 사람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기입한다. 응답자는 가급적 가구주나 가구주의 처를 택한다.

미신고 이유란에는 1차방문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기입한다. 미신고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는 구체적 이유를 밝혀 자세히 기입한다.

⑬의 란에는 신고를 했든 또는 미신고 상태에 있던 응답자의 신고인식 수준을 알아본다. 즉, 법정신고 기

인 구 동 태 신 교 추 구 카 드

① 가구번호	② 가구주성명	③ 현 주 소	④ 본 적

⑤ 자연동태종류	출생	사망	⑥ 사건당사자성명	⑦ 발생년월일	⑧ 신고년월일	⑨ 호적상출생사망월일
				197 년 월 일	197 년 월 일	197 년 월 일
구 분	⑩ 년 월 일	⑪ 정보점수	⑫ 1차방문	⑬ 2차방문	⑭ 3차방문	⑮ 4차방문
⑩ 년 월 일	197 년 월 일	197 년 월 일	197 년 월 일	197 년 월 일	197 년 월 일	197 년 월 일
⑪ 응 답 자 (정보제공자)						
⑫ 미 신고이유						
⑬ 신고권장사항 및 신고와 영향을 준 요인			(신고인식수준)			
⑭ 비 고						
⑮ 호적확인일	197 년 월 일					

보 고 년 월 일 197 년 월 일

면 조 성 원

한, 신고를 해야 할 장소, 신고의무자 등을 질문하여
응답결과를 기입한다.

기 신고한 경우에는 이 신고에 영향을 준 주요 요
인을 기입한다. 예컨대 1차방문전에 里長을 위시한 기
타 마을 사람들이 신고할 것을 권하였는지? 권하였다
면 그 횟수는 몇 번이었는지? 기타 선전인쇄물 또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신고의식이 높아진 것인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기입한다.

미신고 상태에 있을 때는 造成員이 응답자에게 신고
하도록 권장한 사항을 간략하게 기입한다.

⑫ 2차방문 및 그 이후의 방문

1차방문시 미신고인 경우 2차방문은 1개월 후
에 한다. 1개월 간격으로 4차방문시 까지 모든 사
건이 신고되도록 노력한다.

이들 란의 기입요령은 1차방문의 경우와 같다. 다
만 이들 방문시 신고했다고 한 경우 ⑬의 신고권장
사항은 기입할 필요가 없으며, 신고에 영향을 준 요
인을 명확히 숫자로 표시한다. 미신고 이유는 방문

할 때마다 재차 질문하여 미신고 이유의 변화상태를 기입하여, 신고권장사항 역시 변하는 미신고 이유의 해소에 적절한 조성원의 조치사항을 기입한다.

인구동태신고추구카드에 오른 사건이 응답자의 응답을 통해 신고된 것을 알면, 즉시 호적을 확인하여 ⑮ 호적확인 일자를 기입하고, ⑧ 신고년월일을 기입하고, ⑨ 호적상에 올라있는 출생년월일 또는 사망년월일을 기입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이 추구카드의 작성은 완료되며, 이 카드는 定期報告시 研究院에 송부한다.

라. 造成員 活動報告

이 報告는 지난 2주간 또는 15일간의 조성원 활동을 研究院에 보고하는 유일한 것이다.

이 보고에 포함되는 자연동태사건 발생수 및 신고수는 유첨물로 첨부되는 다음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 1) 인구동태발생보고 (자연동태) 매수
- 2) 인구동태신고추구카드 매수

조성원 활동 (일지, 2주간) 보고

197 년 월 일 (요일)
 활동기간 (197 년 월 일 , 활동지역번호 _____ 인
 197 년 월 일 조성원 성명 _____ 인

1. 인구동태발생 및 전표접수건수

구분	조성원	보건요원	리.반.구.장	새마을지도자	어머니회장	4-호 지역지도자	기타	제
출생	()	()	()	()	()	()	()	()
사망	()	()	()	()	()	()	()	()
결혼및 이혼	()	()	()	()	()	()	()	()
제	()	()	()	()	()	()	()	()

-77-

기타 명세 ()

※ () 안에는 전표접수건수를 기입한다.

2. 가정 방문

구분	분	사건확인	권장	기타	제
출생					
사망					
결혼및 이혼					
제					

기타 명세 ()

3. 호적확인

구분	신고	미신고	기타	제
출생				
사망				
결혼및 이혼				
제				

4. 주민등록확인

지역	가구수	인원수	비고
전입	시		
출	타		
제	타면 (동일군내)		
	시		
	타		
	타면 (동일군내)		

5. 기타 활동

6. 유점물

- ① 인구동태발생보고 (자연동태) 매
- ② 인구동태발생보고 (사회동태) 매
- ③ 인구동태신고추구카드 매
- ④ 기타 매

(인구동태 양식 3)

자연동태사항을 포함해서 기타사항도 이 양식에 의
거하여 造成員 活動日誌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 日誌
의 내용을 도합한 수치와도 일치해야 한다.

각 항목별 기입요령은 다음과 같다.

인구동태 양식 3인 조성원 활동보고는 조성원 활동
일지로서도 병용되기 때문에 먼저 造成員活動日誌의
기입요령을 소개한다.

造成員 活動日誌

① 인구동태발생 및 전표접수건수

출생, 사망, 결혼 및 이혼에 관해서만 기입한다.
인구동태 발생수는 인구동태발생보고 매수와 일치하며,
정보제공자별로 기입한다. 인구동태발생수는 출생 및
사망에 있어서는 造成員이 확인한 것만 기입된다. 이
숫자는 인구동태발생보고(자연동태)매수와 일치한다.
전표접수건수는 정보제공자별로 접수된 것을 모두 기입
한다.

인구동태발생전표의 접수건수는 발생수 보다 많을 수
수 있다. 한 사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전표가

들어올 수 있고, 전표내용이 불확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가정방문

가정 방문을 목적별로 세분해서 기입한다. 인구동태발생전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사건확인, 신고를 권장하기 위한 것은 신고권장, 사건발견을 위한 것은 사건발견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1973년 4月 - 6月 期間의 가구조사에서 파악된 것은 사건발견에 포함시킨다.

③ 호적확인

신고란의 신고수는 호적에 의하여 확인된 것만 기입한다. 이 숫자는 출생과 사망에 있어서는 추구카드 완결 매수, 결혼 및 이혼에 있어서는 수정보고 작성 수와 각각 일치한다.

④ 주민등록확인

1개월에 1회 주민등록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月間 1회 기입된다.

地域은 他市, 他郡과 同一 郡의 他面으로 구분하여

전입에서는 전입 ^전원 거주지, 전출에서는 전출지역을 가구수 및 인원수로 표시한다.

가구수는 전 가구이동의 가구수이며, 인원수는 전 가구이동을 포함한 모든 전입 또는 전출 인원수를 기입한다.

⑤ 其他活動

이 란에는 제물을 위한 강연회, 좌담회 등의 회수와 참가인원수, 가구조사 기간에는 가구포작성매수와 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입한다.

⑥ 유 침 물

이 란은 공란으로 둔다.

日誌作成일은 상단 우측에 기입한다.

造成員活動 2週間 報告

이 報告 作成要領은 日誌 기입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활동기간, 활동지역번호를 기입하고, 유침물을 첨부하고, 조성원의 성명을 기입 및 날인하는 것만 다르다.

이 외의 사항은 造成員活動日誌를 토대로 작성한다.

이 報告가 작성된 후 다음 사항을 검증해 본다.

1) 출생과 사망 발생수는 유침물인 인구동태발생보고 (자연동태) 매수와 일치하는가?

2) 출생과 사망의 호적 확인에 의한 신고수는 인구동태 신고추구카드 매수와 일치하는가?

3) 결혼과 이혼의 호적 확인에 의한 신고수는 修正報告數와 일치하는가?

이들 3개 사항은 일치해야 하며, 모순이 있을 때 이를 찾아 시정 후 보고해야 한다.

마. 인구동태발생기록표

이 發生記錄表는 造成員 活動의 能率化를 위해 작성되는 조성원 보관용이다.

이 양식은 里別로 작성하여 이 신고상태에 있는 「인구동태신고추구카드」철의 옷장에 끼어 두는 것이 활동에 유익하다.

이 표를 봄으로써 里단위로 발견된 사건수와 신고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① 활동일 : 이 양식은 조성원 활동을 기준으로 활동한날 년월일로 표시한다.

② 가구번호에서 ⑤발생일까지는 인구동태발생보고 내용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⑥ 신고일 : 인구동태신고추구카드에 기재된 신고일을 기입한다.

한 사건이 발견되어 신고가 완료되면 이 사건에 관한 造成員 活動은 종결 되기 때문에, 신고일이 기입되면 ①부터 ⑦까지 붉은 옆줄을 그어 둔다.

⑦ 비 고 : 미신고 상태에 있는 사건의 가정방문 예정일이나 기타 조성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기입해 둔다.

인구 동태 발생 기록표

지역명

조성원

[illegible]

(인구동태 양식 7)